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69
----------	------

2017년 4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4월 7일 김용석 의원외 10명
2. 회부일자 : 2017년 4월 11일
3.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4월 2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용석(도봉) 의원)

1. 제안이유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레르기 질환”과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자치구,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환경보건법」 제5조 및 제20조
-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3) 기타사항 : 해당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

- 알레르기 질환은 의학의 발전으로 질병 발생에 대한 병태생리의 이해와 새로운 치료약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암, 만성 성인별과 더불어 국민의 3대 만성 질환의 하나로 소아에서는 이제 가장 흔한 만성 질환임.

(단위: %)	'98년	'01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천식	1.2	1.4	2.1	2.2	2.7	2.8	3.1	3.0	2.7	2.8	3.0	3.1
알레르기비염	1.2	2.7	8.3	12.0	12.1	11.9	15.7	14.5	16.8	15.1	13.7	16.4
아토피피부염	-	-	-	2.4	3.2	2.9	3.3	3.4	3.2	3.4	3.0	3.4

※ 자료: 보건복지부(1998-2015),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의 만 19세 이상 의사진단경험률 추이”, 「국민건강영양조사」(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의 만 19세 이상 의사진단경험률 추이)

※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DB)

- 특히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기 중증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행하여 성인기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초래하고,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 천식환자의 증가로 환자·가족·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알레르기비염은 3,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¹⁾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발달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사회·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총칙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각각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정의, 타 법령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1) 질병관리본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2009), 주요상병질환의 경제적부담측정을 위한 계획수립 및 방법론정립을 위한 연구

를 위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되고 있는 알레르기 질환은 현행 질병관리본부의 사업명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차용하여 타 시도에서 제명이나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 천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질병관리본부 지침(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2017년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용어 준용하였음.

□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및 사업시행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현재 집행부에서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는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위탁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²⁾ 및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³⁾, 「국민건강증

2)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주요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진법」 제6조의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⁴⁾을 근거로 시민건강 향상 및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08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14년부터 서울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민간위탁) 개요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위탁기간 : 2017. 1. 1.~2019.12.31.(3년)
- 소요예산 : 38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운영인력 : 총 6명(센터장 1, 팀장 1, 간호사 2, 영양사 1, 행정인력 1)
- 사업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인증 관리(평가)
 -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
 -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알레르기 질환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신뢰성 있는 정보 수집·제공 등
- 위탁연혁
 - 1~4차('08~'11) :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지정위탁(보건복지부)
 - 5차('12~'13) :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공개모집, 2회 단독응찰)
 - 6차('14~'16)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개모집, 적격자심의)
 - 7차('17~'19)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재계약)

3)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1항(건강생활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8조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 및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이 인증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치구 보건소와 자치구별 예방·관리사업과 핵심 추진체계인 아토피 천식교육정보센터 및 북한산국립공원과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원활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아토피·천식 예방사업 관련 기관 현황>

소관기관	협조사항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 및 인증 신청 • 설문조사, 보건교육 등 세부사업 운영 시 협조
자치구보건소(담당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운영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 등
서울의료원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환경건강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 및 인증 지원 • 교육·홍보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설문지 개발 및 결과 분석 • 서울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정책제안
북한산국립공원 (정릉, 도봉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산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 운영 총괄
서울특별시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조항 미비로 협력체계 미흡

비 전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목 표

유병률 감소, 학교 결석률 감소, 지속치료를 증가



중 점 과 제

전략	지역사회 중심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한 알레르기 질환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조사	타 기관 연계를 통한 안심환경 조성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천식 (인증) 안심기관 운영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별 교육·홍보 • 교육자료 개발 및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조사 • 서울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 치유캠프 운영
세부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천식 (인증) 안심기관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前안심학교) 운영 수 확대 운영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사업 전문인력 육성 - 일반인 대상 교육·홍보 -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상담 서비스 구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학부모·보건의료인 등 대상 교육 • 신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알레르기 질환 전문상담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대상 유병률 조사 • 서울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정책 제안 (서울특별시 환경건강연구실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북한산국립공원) 연계를 통한 '건강나누리 캠프' 시행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각 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아토피·천식 안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2.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
3. 알레르기 질환 정책개발 지원
4. 기타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